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원활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로 재배치하며,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0.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항제1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환경교육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4호 중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항”을 “사항(폐PET 등 폐플라스틱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폐PET 등 폐플라스틱에 한한다)

제8장의2에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5의3과 같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93”을 각각 “397”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2”를 “4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를 각각 “23”으로 하고,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0”을 각각 “74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2”를 “100”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1”을 각각 “74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4”를 “102”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6”을 각각 “35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5”를 “51”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8”을 각각 “35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1”을 “57”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을 각각 “67”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을 각각 “6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4”를 각각 “169”로 하고, 방송통신
서기 5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4 다음에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를
신설하고,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3”을 “26”으로 한
다.

별표 16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4”를 각각 “169”로 하고, 방송통신
서기 5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4 다음에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를
신설하고,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3”을 “26”으로 한
다.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
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3]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4조의5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섬진강 홍수통제출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중 섬진강 및 섬 진강남해수계 지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⑮ (생략) <16>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u>환경교육종합계획</u> 의 수립·시행 2. ~ 4. (생략) 5. <u>환경교육진흥위원회</u>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u>사회환경교육지도사</u>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 13. (생략) ⑰ ~ ⑳ (생략)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 -----. 1. ----- -- <u>국가환경교육계획</u> ----- ----- 2. ~ 4. (현행과 같음) 5. <u>환경교육위원회</u> ----- ----- 6. <u>환경교육사</u> ----- ----- 7. ~ 13. (현행과 같음) ⑰ ~ ⑳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순환국) ① ~ ③ (생략)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폐기물관리기본계획</u> 의 수립·총괄 2. ~ 8. (생략)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u>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제8조(자원순환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삭제> 2. ~ 8. (현행과 같음) ⑤ ----- -----. 1. <u>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u>

같다)에 관한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3. (생략)

4. 폐기물 수출입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7.·8. (생략)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4. ~ 11. (생략)

⑦ (생략)

<신설>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

5. (현행과 같음)

6. -----
-- 사항(폐PET 등 폐플라스틱은 제외한다)

7.·8.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폐PET 등 폐플라스틱에 한한다)

4. ~ 11.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u>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5의3과 같다.</u>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u>① 별표 7 의 정원 2명(서기관·기술서기 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과 별표 12의 정원 1명(서기관·기 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7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 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과 별표 12의 행</u>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u>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u> ② ~ 제5조 (생 략)	② ~ 제5조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93</u>	• <u>397</u>	+4
일반직 계	• <u>393</u>	• <u>397</u>	+4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 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42</u>	<u>46</u>	+4
•	•	•	
•	•	•	

[별표 10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2</u>	<u>23</u>	+1
일반직 계	<u>22</u>	<u>23</u>	+1
•	•	•	
•	•	•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9</u>	<u>10</u>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40	748	+8
일반직 계	740	748	+8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2	100	+8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41	749	+8
일반직 계	741	749	+8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4	102	+8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6</u>	<u>352</u>	+6
일반직 계	<u>346</u>	<u>352</u>	+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45</u>	<u>51</u>	+6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8</u>	<u>354</u>	+6
일반직 계	<u>348</u>	<u>354</u>	+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1</u>	<u>57</u>	+6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6</u>	<u>67</u>	+1
일반직 계	<u>66</u>	<u>67</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u>	<u>6</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7</u>	<u>68</u>	+1
일반직 계	<u>67</u>	<u>68</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u>	<u>6</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64</u>	<u>169</u>	+5
일반직 계	<u>164</u>	<u>169</u>	+5
•	•	•	
•	•	•	
<u>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u> <u>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u>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u> <u>또는 시설연구관</u>	<u><신 설></u>	<u>1</u>	+1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23</u>	<u>26</u>	+3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64</u>	<u>169</u>	+5
일반직 계	<u>164</u>	<u>169</u>	+5
•	•	•	
•	•	•	
<u>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u> <u>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u>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u> <u>또는 시설연구관</u>	<u><신 설></u>	<u>1</u>	+1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23</u>	<u>26</u>	+3
•	•	•	
•	•	•	